

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윤종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4.

발의자 : 윤종필 · 김명연 · 기동민

남인순 · 박덕흠 · 성일종

송석준 · 신용현 · 오제세

원유철 · 이철규 · 임이자

정우택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식품제조 · 가공업자,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,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· 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.

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

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6항 신설).

##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제2항(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받은 식품위생교육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1조(식품위생교육) ① ~ 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41조(식품위생교육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</u> <u>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</u> <u>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. 다만,</u> <u>제2항(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</u> <u>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</u> <u>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</u> <u>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</u> <u>교육으로 실시한다.</u></p> <p><u>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</p>